

제22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제2차 본 회의(2016.12.9.)

조례·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연번

목 차

1	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3
3	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-----	5
4	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-----	7
5	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-----	9

**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1. 2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2. 개정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, 법령에서 위임한 바 없이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나 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명과 용어 변경
 - 재래시장(등록시장, 인정시장) ⇒ 전통시장
 - 시장 활성화구역 ⇒ 상권 활성화구역
- 나. 법령 개정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 요건 완화(안 제16조·제17조)
 - 등록 ⇒ 신고
- 다.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조항 삭제
(안 제8조~제10조·제26조·제30조·제33조)

-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 ·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
 - 인정시장의 인정취소, 임시시장의 등록취소, 상인회의 등록취소,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,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
- 라. 상위법령과 불부합, 법령 개정 미반영 조항 삭제 및 정비
(안 제2조 · 제11조, 제9장)
- 법에서 정의한 재래시장, 임시시장, 상점가 등 용어 삭제
 -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 조항 삭제
 - 과태료 부과 · 징수 관련 조항 삭제 등
- 마. 영구법화에 따른 유효기간 삭제(부칙 제2조)
- 바.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 정비
- 정의 ⇒ 뜻, 자 ⇒ 사람, 생략 ⇒ 현행과 같음 등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,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과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된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**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1. 2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2. 개정이유

- 「주차장법」 개정 등에 따라 계약방법, 가산금 부과대상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신설(안 제2조의 2)
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규정 위임
- 나.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설(안 제2조의 3)
 -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다.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가산금 부과대상 정비(안 제3조)
 -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
 - ※ 「주차장법」 제9조에서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임

라. 수탁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선정방법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 삭제(안 제6조)

마. 주차요금 50퍼센트 감경대상 추가(안 제9조)

- 환경친화적 자동차, 경남! 다누리카드 소지자

바.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(안 제12조)

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에 위임되어 있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인 경우에 “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”은 “3퍼센트”로 한다.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주차장법」,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된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1. 2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2. 폐지이유

-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하였으나, 2011년 융자금 상환 만료 등 특별회계 운영목적은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함.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1980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하였으나, 2012년 말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었으며,

- 또한 농어촌주택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추진되고 있어 창원시 등 도내 11개 시·군에서도 조례를 폐지하였음.
-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상환 만료 등으로 운영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**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1. 2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2. 개정이유

- 공동주택을 체계적·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「주택법」에서 별도의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제정('16.8.12)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명과 목적 변경(안 제1조)

- 조례명: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
⇒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
- 목 적: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
⇒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
- 근 거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0조 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위원회의 회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나.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 정비(안 제2조, 제8조 제1항)

- 제정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으므로 삭제
- 분쟁조정 신청 근거 명문화로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 신청요건 삭제

다. 상위법령 재기재·확인 불과한 조항 삭제(안 제3조·제4)

- 위원회 구성, 위원회의 기능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1조(기능), 제87조(구성)

라. 대표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의 2)

-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.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체계적·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「주택법」에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2016. 8. 12. 분법·제정됨에 따라,
- 법령에 맞게 그 내용을 정비하고,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6. 11. 2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6. 11. 25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6. 12. 6.

2. 제안이유

- 천적을 주제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,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치한 “거창천적생태과학관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3. 위탁개요

- 시설명: 거창천적생태과학관
- 위치: 사과테마파크 부지 내(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-60)
- 규모
 - 천적생태과학관: 1,040m²(지하1층, 지상3층)
 - 천적사육온실: 2동(432m²)
 - 곤충체험 및 사육온실: 2동 484m²
 - 천적사육온실 주변 조경시설물

○ 주요업무

- 천적 생태과학관 시설물 및 전시시설 유지·관리
- 천적교육 및 전시·홍보와 천적곤충표본 제작
- 천적사육온실 관리 및 천적생산 공급
- 곤충체험·사육온실 및 주변 조경시설물 관리

○ 추진경위

- 2011. 10. 25.: 천적생태과학관 개관
- 2012. 1.: 천적과학관 등록(경남 제4호)
- 2012. 3.: 학교 밖 창의체험기관으로 선정
- 2013. 9. ~ 현재: 천적 생산 및 공급(4품목 18,000병)
- 2014. 9.: 16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
- 2015. 2.: 천적생산 및 보급을 위한 온실 1동(240m²) 준공
- 2016. 6.: 최우수과학관상 수상(미래창조과학부장관)
- 2011. ~ 현재: 방문객 현황(95,550명)

○ 위탁계획

- 수탁기관: (사)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(대표이사 구덕서)
- 위탁기간: 2017. 1. 1. ~ 2019. 12. 31.(3년간)
- 위탁내용: 천적생태과학관 운영, 시설관리 및 천적생산 농가 보급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동의안은 천적을 주제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,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“거창천적생태과학관”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(2016.12.31.)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 및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6조 제2항 3호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에도, 2016. 11월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았으며,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2016.11.25.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.
-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결하여야 하나, 천적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동의는 하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등 업무가 소홀·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와 위탁 재계약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고,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